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인주화

2024/ 3/ 27 통권 1668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가난한 여자들에게만 돈 귀주는 은행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 · 납부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폐업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와 주요 판례
- 국제성장, 법인세 신고기간을 맞아 일선 현장 방문
- 역동적 경제성장을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
- 조세특례 자기 점검 요령
-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백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 M&A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근로시간 줄었다고요? 워라밸장려금 받아주세요!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색션

- 국내외사업장 국내 기준사업장이 아닌 신설 사업장으로 이전시에도 증설요건 충족되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적용됨 (p.11)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근로소득증대, 청년 · 일반 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 적용방법>

항목구분	요건, 적용범위	세액혜택 계산방법
㉔ 근로소득 증대 (조특법 제29조의4)	① 중소기업 ② 상시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3년 증가율보다 크고 ③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 이상	· 중소기업 : 평균임금초과액 × 20% 세액공제 · 중견기업 : 평균임금초과액 × 10%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근로자 임금증가액 × 20%(중견은 10%)
㉕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7)	① 모든기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② 청년 · 경단녀 등 상시근로자 증가 ③ 세액공제 적용 2년간(중소 · 중견기업) ④ 종전 제29조의5(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2017년까지) 내용을 흡수함	① 청년 등 증가인원수 × 400만원(중견 800만원, 중소기업 1100만원, 수도권 밖 중소기업 1200만원) ② 일반 증가인원 × 중견기업 450만원(수도권 내 중소기업 700만원, 수도권 밖 중소기업 770만원)
㉖ 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조특법 제30조의4)	① 중소기업 ② 상시근로자 증가	① 청년 · 경단녀 고용증가인원수 × 회사부담사회보험료 100% ② 일반근로자 고용증가인원수 × 회사부담사회보험료 50%(신성장 서비스업 75%)
㉗ 경력단절 여성, 육아휴직 복귀자 (조특법 제29조의3)	① 중소기업 · 중견기업, ② 22년 12월 31일까지 ③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로 흡수됨)	① 경단녀 재고용 2년 인건비 × 30%(중견 15%) ②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자 인건비 × 30%(중견 15%)
㉘ 통합고용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8) ㉔+㉕+㉖와 선택적용	① 모든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② 청년 등과 일반 상시근로자 적용 ③ 29조의7과 선택적용(조특법 제127조11항)	① 청년·경단녀 등 고용증가인원수 × 400만원(중견 800만원, 중소기업 1450만원, 지방중소기업 1550만원) ② 일반상시증가인원 × 중견 450만원(수도권 내 중소기업 850만원, 지방중소기업 950만원) ③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당 1300만원(중견 900만원)
㉙ 고용유지 과세특례 (조특법 제30조의3)	① 중소기업 ② 1인당 시간임금을 유지 ③ 모두퇴직이 아닐 것	연간 임금감소액 × 10% + 시간당 임금 상승보전액 × 15%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 박운중공인회계사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68호 / 주간 13호

2024. 3. 27.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 FAX: (02) 718-856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7575
팩스: (02) 718-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3988
팩스: (051) 642-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9761
팩스: (053) 627-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2427
팩스: (042) 526-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근로소득증대, 청년·일반 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 적용방법	표지
CEO에세이	가난한 여자들에게만 돈 쥐주는 은행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한국인 비거주자 해외용역 제공에 대한 보수 지급시 원천징수 문의 - 교육비 정부지원 환급금 문의 - 건물 매입세액 공제 - 회계처리 문의 - 기계장치 수리에 따른 비용에 대한 자본적지출 가능여부	4 5
눈에맞는 절세미인	폐업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6
매일 절세재무요점	- 주요 세제 개편 추진 사안 -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	8 9
직장인 Survival	제스처로 사람을 읽는 법 8가지 - ③	10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정책과-1195, 2023.05.23) - 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 시 부가령§64②(2)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법규재산-344, 2023.04.11)	11 12
세정 뉴스와 해설	깜빡하기 쉬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이러면 양도세 수억 낸다	13
마케팅 Tax consulting	국외사업장을 국내 기존사업장이 아닌 신설 사업장으로 이전시에도 증설 요건 충족되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적용됨	11
세무정보	-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와 주요 판례 - 국세청장, 법인세 신고기간을 맞아 일선 현장 방문 - 역동적 경제성장을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 - 조세특례 자기 점검 요령 -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백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14 25 27 31 37
경영정보	- M&A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44
노무정보	- 근로시간 줄였다고요? 워라밸장려금 받아주세요!	46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3

가난한 여자들에게만 돈 꺾주는 은행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외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여자는 평화와 풍요와 번영을 낳는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아레스라는 전쟁의 신은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인 반면 평화의 여신은 제우스와 테미스 사이에서 태어난 딸 에이레네인 걸 봐도 그렇다. 에이레네의 뜻은 평화(Peace)이고 로마신화의 마르스(Mars), 파스(Pax)에 해당된다. 부(富)의 신 플루토스는 에이레네의 아들이다.

오늘날 한국이 이만큼 먹고사는 데는 한국여자들 특유의 가난 극복에 대한 기도와 억척 그리고 근검절약에 힘입은 바가 절대적이다. 사실 몇 십 년 전만해도 농노에 가까운 농부들은 논밭에 나가 땀 흘리기보다 자포자기해서 술과 노름에 빠진 경우가 꽤 많았다. 때문에 눈물로 지새우며 정한수를 떠 놓고 손을 비비는 가난에 찌든 아낙네가 상당수였다. 그러던 것이 구로공단 여공들의 구슬땀과 서독 이역만리로 돈 벌러 나간 광부와 간호원들의 인고 그리고 열사의 땅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현장의 남편을 도와서 독수공방을 이겨낸 아내의 억척이 한국경제의 기반을 닦았다.

물론 여자의 탐욕과 허영도 있다. 중국 당나라 측천무후의 탐욕과 이집트 클레오파트라의 야망도 오래도록 사람 입에 오르내릴 일이다.

“여자의 말을 잘 들어도 패가하고 안 들어도 망신한다.” 조선시대 우화에 나오는 말이다. 그만큼 남녀의 협력은 어렵다는 뜻이다. 돈버는 일에도 여자를 달통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 언필칭 ‘돈장사’를 한다는 은행은 세상을 모른다는 비판을 받을 만한 구석이 있다. 여자들에게 인색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난한 여자들은 근처에 얼씬조차 못하게 했다. 대출에는 반드시 담보가 있거나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가능성과 미래에는 눈을 두려고 하지 않는다. 담보를 요구하고 그것조차 은행자체가 평가하지 않고 제3기관이 평가토록 한다. 그래서 전당포만도 못하다는 비아냥을 듣는다. 최소한 전당포는 담보물을 스스로 평가하고 돈을 빌려준다. 더구나 은행은 비 올 때 우산을 뺏어가고 비가 안 올 때는 우산 빌려가라 한다.

그라민(Grameen)은행은 1976년 방글라데시의 모하메드 유누스(Mohammad Yunus)교수에

의해 설립됐다. 이 놀랄만한 은행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대출해 주었는데 거의 고객은 여성이다.

방글라데시가 1971년 독립했을 때 방글라데시 국민들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다. 당시 모하메드 유누스 교수는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었다. 그럴듯한 경제이론을 전파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죽어갔다. 그에게는 괴로운 일이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돈으로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돈으로 도왔다. 그런 도움을 제도화 시켜야만 했다. 은행을 찾아갔지만 그곳은 부자에게만 대출해 주려했다. 설득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증인이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수많은 서류에 서명한 뒤 대부를 받아 여러 사람에게 나눠줬다. 만약 그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그가 갚아야만 했다. 놀랄 일은 모든 사람들이 상환일을 준수했다. 그래서 은행에 더 많은 대부를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그는 은행을 설립했다. 그라민은행은 약200만명의 고객 중 94%가 가난한 여성고객이다. 대출 받은 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빚진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라민은행은 채무자에게 몇 가지 지켜야 할 원칙을 요구할 뿐이었다. 결혼지참금을 받지도 주지도 말 것.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것. 오염된 물은 마시지 않을 것. 그리고 나무를 심을 것. 반면에 은행으로서 채무자에게 돈의 사용에 대해 조언을 피했다. 그래서 차용자들 스스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했다. 그라민은행은 미래와 자율을 나눠준 것이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3월 15일 (금)	3월 18일 (월)	3월 19일 (화)	3월 20일 (수)	3월 21일 (목)
미	달	러	(USD)	1316.90	1328.40	1333.00	1338.50	1338.70
일	본	엔	(JPY)	888.12	891.51	894.24	886.81	887.17
영	국	파	운드 (GBP)	1678.78	1691.32	1696.38	1702.64	1712.60
캐	나	다	달 러 (CAD)	972.67	980.59	984.71	986.33	993.14
홍	콩	달	러 (HKD)	168.35	169.83	170.48	171.11	171.14
중	국	원	(CNH)	183.04	184.32	185.03	185.64	185.62
유	로	화	(EUR)	1433.25	1445.90	1449.24	1454.15	1463.40
호	주	달	러 (AUD)	866.06	871.30	873.98	874.17	883.01
싱	가	폴	달 러 (SGD)	985.37	992.79	995.41	997.35	999.55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1.03	282.37	282.51	282.80	282.55

한국인 비거주자 해외용역 제공에 대한 보수 지급시 원천징수 문의합니다

Q 회사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유럽촬영시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현지 코디, 차량 렌트, 번역 업무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원천징수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세율 적용은 총지급액에 대해 소득세 20%,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인지요?

A 비거주자에게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정부지원 환급금 문의

Q 교육비용을 납부하고 교육이수를 하였는데 정부지원금 환급이 가능한 교육이라서 일부금액을 환급받았습니다. (환급금 : 10만원 미만)
환급금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교육비용에서 차감시키는지, 기타매출로 반영하는지 처리방법을 문의드립니다.

A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 등은 기타매출이 아니고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건물 매입세액 공제

Q 기숙사 용도로 샀으나 사실상 기숙사로 사용하지 않고 임원이나 거래처 사용 건물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요?
부가세와 법인세에서 처리방향은?

A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아닌 건물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실제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상으로 사업용건물 취득시 자산으로 반영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문의

Q 당사는 A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하는데 생산 캐파가 부족하여 A가 해야 할 조립가공을 당사 외주업체의 지원을 받아 작업을 진행(4월~5월)하였고 대금은 당사가 외주업체에 먼저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에 5월 마감시 A에게 외주업체 지원 인건비를 공제하고자 하는데 질문인 즉,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외주업체 지출되었던 추가 인건비 품의를 증빙으로 A 사에 대금 지급시 공제처리만 하면 될런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A사를 매입자로 하여 발행해 처리해야 할런지 여부입니다.

A 외주업체의 조립가공용역에 대한 최종 대금 부담자가 A이므로, A는 조립가공용역을 제공한 외주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고 해당 조립가공용역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귀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기계장치 수리에 따른 비용에 대한 자본적지출 가능여부

Q 기존에 20년정도 사용한 기계장치에 대해 수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계장치 수리는

- 최초 성능이 100 이었으나 오랜 사용으로 인해 성능이 70으로 떨어져있으며 수리를 통해 100의 성능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작업
- 기계의 오랜 사용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이에 대해 전체적인 수리를 진행해 원활한 사용이 되도록 하는 작업

상기 2가지의 형태가 주를 이룰 예정입니다.

해당 수리를 통해 기계장치의 사용가능기한은 현재의 상태일때보다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럴 경우 해당 수리비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법인세법상 자본적지출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의미하는데, 자산이 원래 성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도 자산의 원래성능회복을 위한 수선비라면 사용가능기한이 일부 늘어도 수익적지출로 반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담실 백종훈 차장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경영상의 이유로 여러 사업장이 통폐합되기도 하고, 지점사업장 등이 폐쇄되기도 하면서 사업장간 재고재화의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동일 법인의 사업장간 재화가 이동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등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사업폐지시의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사업자 등록한 이후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폐업시의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렇게 사업폐지시의 잔존재화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개인적 공급이나 사업상의 증여와 마찬가지로 모든 재화의 사용 및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형평성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사업을 폐지하거나 개시하지 않은 사업자의 잔존재화에 대해 재화의 자기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그 잔존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도록 함으로써 그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와 동일한 부가가치세를 부담시켜 과세형평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업장폐지하면서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 이전하는 경우는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의 잔존재화에 대해서도 과세형평성 확립을 위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사업을 폐지하는 때란 폐업일로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말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라도 ①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계속 유지하는 경우, ② 동일 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던 자가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③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는 경우, ④ 미착재화, 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은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사업장 통폐합 및 지점폐업을 하는 경우 지점 등에 보관하고 있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상의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즉, 지점사업장을 폐지하면서 지점의 재화를 본점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본점으로 이동된 뒤 판매·출고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또한 고정자산의 경우 지점사업장을 폐지하면서 종전 지점의 고정자산(건물, 기계장치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본점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으며 추후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7【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2.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3.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4.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미도착재화
5.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

♣ 부가 46015 - 407, 2001. 2. 2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주요 세제 개편 추진 사안

여당	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노후차 개소세 70% 인하 - ISA 납입 한도 연 4000만원으로 확대 - 근로자 재형저축 도입,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에 인플레이 감안하는 물가연동 소득세 검토 - 세제 전반 개편해 실질 소득 확대 추진 - 금투세 실시 전제 ISA 한도 파격적 확대

화

해외 주요국 상속세 사례

캐나다	• 상속세 ×, 자본이득세 도입
스웨덴	• 상속세 ×, 자본이득세 도입
미국	• 상속세 ○, 지난해 기준 1290만달러(약 173억원)까지 통합세액공제 적용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기업 상속 특별 세제혜택 적용 • 왈롱지역: 특정 조건 충족시 가족기업 상속세 0%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

시행 시기	구분	제도
1월	세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 시 증여재산 공제(부부 합산 최대 3억원)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범위 확대(연 240만원 → 300만원)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특례 구입 · 전세자금 대출 도입 · 특례보증자리론 종료(1월 29일)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기재 의무화
2월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연 2.2% 주담대 제공)
3월	세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 부과 구간 완화
4월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
5월	세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2025년 5월까지)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상반기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기한 연장(2025년 12월 31일까지)
7월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임대사업자 반환보증 가입 요건 강화(공시가격 126% 이하 임대주택만 가능) · 전세보증금 반환 완화 정책 종료
12월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 종료 ·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유예기간 종료
하반기	세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500만원 한도 100% 면제)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아파트 확대



제스처로 사람을 읽는 법 8가지 - ③

7. 마음자세의 제스처

갑자기 몸을 움직여 자기 발이 출입구를 향하도록 앉는 것은 회의나 대화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서 끝나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신호를 포착하여 진지한 어조로 "늦었군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라고 말할 것이다. 이때 상대가 말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몸을 의자 끝 쪽으로 움직이면 진심으로 떠나고 싶어한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나타내주는 증거다.

8. 재확인 제스처

담요나 다른 물체에서 안도감을 추구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성인이 깍지를 긴 채 엄지손가락을 서로 비벼대는 것도 안도감을 느끼기 위한 제스처다. 펜이나 연필을 입에 물고 씹는 것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인 재확인 제스처의 하나는 뭔가 불안한 이야기를 하거나 듣고 있을 때 천천히 품위있는 자세로 손을 목 부위로 가져가는 것인데, 이는 상대의 말을 완전히 믿고 있지 않다는 신호다. 손톱을 물어뜯는 것은 불안이나 내적 갈등, 근심을 나타낸다.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국외사업장을 국내 기존사업장이 아닌
신설 사업장으로 이전시에도 증설요건 충족되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적용됨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
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
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증설의 요
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
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
을 수 있는 것임

조세정책과-1195, 2023.05.23

질 의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 여부
등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에 따른 해외진출기
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국외사업
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
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
된 사업장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
제10항에 따른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
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
한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조세특
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3항제2호에 따라 해
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법
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은 동업자에 배분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임

서면법규법인-4714, 2023.04.27

질 의

- '23사업연도부터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
하고 일반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22사업연도까지
배분하지 못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의 처리방

회 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동업기업과
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
행령」 제100의18 제4항에 따른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은 소멸하는 것임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자동말소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임대하더라도 자동말
소일까지 6년 이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97조의4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법규재산-43, 2023.03.08

질 의

-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임대하여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
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이하 "쟁점특례"라 함)에 따른 추가공제율 적용 시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에 따른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A주택)을 자동말소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임대하더라도 자동말소일까지 6년 이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 시 부가령§64②(2)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법규재산-344, 2023.04.11

질 의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특약사항으로 건물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 부가령 64②(2) 적용여부

회 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 2023.3.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2023.03.30.

[질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특약사항으로 건물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 부가령§64②(2) 적용여부 (제1안) 적용할 수 있음(제2안)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시설개선총당금이 질의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법규법인-1191, 2023.03.10

질 의

-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시설개선총당금을 수령한 경우 익금 여부

회 신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법인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부과시, 시설물의 교체·보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설개선총당금을 부과하는 경우 시설개선총당금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깜박하기 쉬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이러면 양도세 수익 낸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1일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비과세·감면 요건, 절세 방안 등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특독(talk talk)' 시리즈 2회차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양도소득세 실수특독 제1회차에서도 비과세·감면을 받지 못한 대표적인 실수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이번 제2회차는 국민들의 관심이 큰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수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일시적 2주택 및 상속 주택 특례, 세대분리 요건 등 비과세 적용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수록했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하여 각 테마별로 다양한 실수사례를 소개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관심이 많지만, 요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 자칫 수익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 실수특독' 국세청 누리집에 국세신고 안내 탭 아래에 항목에 게재돼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기재부 "관세인하 물량 무제한 확대... 체리·키위도 인하"

정부가 관세 인하 대상 과일 품목에 체리·키위·망고스틴을 추가하고 관세 인하 적용 물량도 무제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안도 검토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물가 동향과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는 3.1% 오르면서 전달(2.8%)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근원물가는 2%대 중반 수준이지만 과일·채소 등 먹거리 중심으로 높은 물가가 지속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올해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는 전임 정부인 2021년 11월 약 6개월 한시 조치로 도입됐지만 올해 4월까지 총 8차례 연장됐다. 휘발

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보다 205원 낮다.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된 상태다.

정부는 수입 과일 공급을 늘리기 위해 관세 인하 적용 물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바나나·파인에 플 등 24종인 관세 인하 품목에 체리·키위·망고스틴을 추가한다.

정부는 식품 가격에 원가 하락분이 반영되도록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옥수수·대두·설탕 등 주요 식품 원료 관세는 인하하기로 했다.

주요 서비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원칙을 유지한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각 부처가 동향을 지속해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2% 물가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모든 정책 역량을 모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당서 잔술 판다"... 도매업자 무알콜 음료 공급 허용

앞으로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콜·무알콜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경우 매년 200%이상 성장 중인 무알콜 시장에서 2025년에는 2천억 이상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물가를 반영해 정부는 '잔술' 판매도 가능토록 했다. 잔에 담긴 값싼 술을 찾는 '잔술·혼술마니아'들에게 희소식이 생긴셈이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판매가 가능해 질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면서 "입법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와 주요 판례

- 국세청, 2024. 3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 법인

① 조합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조합의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 요지 :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로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사전-2021-법규법인-1529, 2022. 1. 10.)

②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해당 여부

▶ 요지 : 토지('잡종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업무(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사전-2021-법규법인-1851, 2022. 1. 17.)

③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지 :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기목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아파트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사전-2021-법규법인-132, 2022. 1. 19.)

④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미수이자를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 요지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원천징수 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지 않음(사전-2021-법규법인-1884, 2022. 1. 21.)

⑤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요지 :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됨(사전-2022-법규법인-0020, 2022. 1. 25.)

⑥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요지 :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이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2021-법규법인-7757, 2022. 1. 28.)

⑦ 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의 폐지 여부

▶ 요지 :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로서 승계 자산가액 중 2분의 1 미만 처분 및 사업에 미사용한 경우 법인령 § 80의4⑧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음(사전-2022-법규법인-0010, 2022. 2. 10.)

⑧ 화재로 상품이 소실된 경우 손금귀속시기 등

▶ 요지 : 보험 미가입 상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화재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하며 화재로 소실된 상품원가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가능함(사전-2022-법규법인-0192, 2022. 2. 16.)

⑨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요지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승계한 자산을 최신판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5, 2022. 2. 22.)

⑩ 녹색프리미엄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 요지 : 녹색 프리미엄의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다른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녹색프리미엄은 내국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예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021-법규법인-5127, 2022. 2. 24.)

⑪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 요지 : 내국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남매이면서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



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사전-2022-법규법인-0238, 2022. 3. 17.)

12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처분한 경우 과세대상 제외 여부 등

▶ 요지 : 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상가를 처분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상가가 처분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상가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사전-2021-법규법인-1039, 2022. 4. 25.)

13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요지 :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를 개발하는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사전-2022-법규법인-0477, 2022. 4. 28.)

14 고유목적사업 지출 해당 여부

▶ 요지 : 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사전-2022-법규법인-0492, 2022. 5. 13.)

15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 요지 : 내국법인이 임대 사용하다가 이후 나대지로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내국법인의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사전-2022-법규법인-0503, 2022. 5. 26.)

16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판단

▶ 요지 :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공장용지 조성공사(토지정지작업 및 구획정리작업)를 실시하던 중에 해당 토지를 매각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봄(서면-2021-법규법인-5034, 2022. 6. 30.)

17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 요지 :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 손금산입됨(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22. 8. 24)

18 의료법인이 지급받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의 수익 해당 여부

- ▶ 요지 :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되어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 2022. 8. 29.)

19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

- ▶ 요지 :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0, 2022. 8. 31)

20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 시 신주발행이 없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 여부

- ▶ 요지 :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3, 2022. 9. 27.)

21 현물출자시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 ▶ 요지 :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 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서면-2022-법규법인-1844, 2022. 10. 12.)

22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하는 경우로서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

- ▶ 요지 : 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최종시세가액(할증하지 않음)임(사전-2022-법규법인-0408, 2022. 10. 25.)

23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요지 : 부동산매매업자가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실시한 경우 '건설 착공'에 해당 하지 않음(사전-2022-법규법인-1038, 2022. 11. 7.)



24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위반 여부

▶ 요지 :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승계받은 후 승계받은 자산 중 일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나머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나머지 자산의 처분이 당초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로 보지 않음(서면-2021-법규법인-6710, 2022. 12. 15.)

25 농업회사법인이 종중원으로부터 농지를 무상 취득한 경우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 요지 : 농업회사법인이 종중 소유(실제소유자) 농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시점의 자산 시가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함(서면-2021-법인-5959, 2022. 3. 11.)

26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방법

▶ 요지 : 건물(미준공)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토지(전) 전체 면적에 대해서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서면-2021-법인-5788, 2022. 3. 16.)

27 타법인 주주로부터 주식매입이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요지 : 내국법인이 기업집단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거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서면-2021-법인-5039)

28 내국법인의 본지점간 계산서 교부 방법

▶ 요지 : 지점이 공급받은 재화를 본점에서 결제 하는 경우 본지점에서 각각 계산서 수취할 수 있고 본지점간 자금이체 거래는 계산서 발급대상 아님(서면-2021-법인-5786, 2022. 4. 8.)

29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시가 적용 방법

▶ 요지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임(서면-2022-법인-2984, 2022. 7. 28.)

30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을 비적격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양도손익이 피합병법인의 소득인지 여부

▶ 요지 :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부채를 비적격으로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22-법인-2190, 2022. 12. 30.)

◎ 조특

31 외주제작사에게 지급한 용역비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여부

▶ 요지 :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9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기준-2021-법무법인-0240, 2023. 3. 13.)

32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월중 퇴직자의 임금지급액 포함 여부

▶ 요지 :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퇴직월 임금」은 해당 사업연도 임금지급액에 포함됨(서면-2023-법규법인-0390, 2023. 4. 3.)

33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 요지 : 창업당시 청년이면서 50%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감면기간 중 대표자로 변경되고 이와 함께 종전대표자의 지분전체를 인수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 중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사전-2023-법규법인-0148, 2023. 4. 13.)

34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으로 이전한 후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 시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여부 등

▶ 요지 : 「수도권 밖에서 창업 → 수도권으로 이전 →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보아 잔존감면을 적용하는 것임(사전-2023-법규법인-0165, 2023. 5. 2.)

35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조특법§13의2①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지 :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상환전환우선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1항제1호의 '주식'에 해당함(사전-2023-법규법인-0370, 2023. 6. 26.)

36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 해당 여부

▶ 요지 :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립한 금액 중 이의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제2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함(기준-2022-법무법인-0199, 2023. 6. 30.)

3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 방법

▶ 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임(기준-2022-법무법인-0212, 2023. 7. 12.)

38 냉장·냉동 보관시설의 외부 창고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지** :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에 해당하는 창고에 투자한 경우, 해당 창고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임(서면-2022-5578, 2023. 8. 25.)

39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 **요지** : '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년보다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 하는 것임(서면-2022-법규법인-3938, 2023. 9. 5.)

39 미환류소득 산정 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 **요지** :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이월하지 않는 것임(기준-2022-법규법인-0219, 2023. 10. 11.) 법인

40 상품 교체비용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 **요지** :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이 손상됨에 따라 상품으로 교체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사전-2023-법규법인-0654, 2023. 10. 31.)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1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한지(부당행위)

▶ **요지** :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이익분여에 해당함(대법원-2022-두-46053, 2022.09.29.)

2 협의의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합병차익에 해당하는지(익금)

▶ **요지** :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협의의 자기주식)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으로 합병차익을 산정하는 요소가 되기는 하지만 합병법인이 이를 처분하는 행위는 합병과는 구별되는 후속거래로 보아야 하는 점, 협의의 자기주식은 양도성과 자산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합병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다른 사유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하여 이익을 얻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순수한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익금 산입 처분은 정당함(대법원-2018-두-54323, 2022.06.30.)

③ 조세회피목적의 분할·합병은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지(익금)

▶ 요지 : 이 사건 분할·합병은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이를 통해 부동산 장부가액을 높이는 등으로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근거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분할·합병 없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소신고한 부동산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17-두-41313, 2022.08.25.)

④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한지(부당행위)

▶ 요지 :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대법원-2021-두-56992, 2022.02.24.)

⑤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익금)

▶ 요지 : 현지법인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유보시킴으로서 조세회피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대법원-2021-두-45022, 2021. 10. 28.)

⑥ 매출총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래에서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엄격하게 분석하여야 함(손금)

▶ 요지 : 매출총이익법은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를 엄격하게 분석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영업비용은 해당 거래로 인한 매출총이익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다른 거래에도 함께 소요되는 영업비용의 경우에는 그 상관관계가 떨어진다고 볼 수 밖에 없음(대법원-2021-두-42481, 2021. 10. 14.)

⑦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업무무관자산)

▶ 요지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후 건설을 중단한 경우, 그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법인이 당해 건설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 정황이 있더라도, 당해 토지는 업무 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대법원-2020-두-56667, 2021. 3. 25.)

⑧ 결손금 감액경정의 행정처분 해당여부(결손금)

▶ 요지 : 개정 법인세법 §13①후문에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신고·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으로 축소한 이상, 납세의무자는 결손금감액경정 통지를 받고 이를 곧바로



다투지 않으면 이후 사업연도에서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해 종전 결손금 감액경정이 잘못 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63788, 2020. 7. 9.)

9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의 수익사업 손금해당여부(손금)

▶ 요지 : 비영리법인이 회원들로부터 부담금을 받아 수익사업을 운영한 후 그 이익을 부가금으로 가산하여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영위한 경우,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을 뿐,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이자비용으로 보아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8-두-32330, 2020. 5. 28)

10 기술사용료 채권포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여부(부당행위)

▶ 요지 : 원고는 국외 특수관계자인 A에게 신기술을 제공하였으나, A가 기술사용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기술사용료 채권을 회계장부에 한 번도 계상하지 않았고, 10년 동안 A에게 기술사용료 지급 청구를 하지 않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A에 대한 기술사용료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18-두-56459, 2020. 3. 26.)

11 법인이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직원들에 대한 인정상여로 임의 계상한 경우 법인의 통상적 손금이 아님(손금)

▶ 요지 : 법인이 직원들이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대납하고, 임의로 인정상여로 계상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장성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법인의 통상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대법원-2019-두-47315, 2019. 11. 14)

12 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부당행위)

▶ 요지 : 원고회사와 원고회사의 임원들인 이 사건 이사들과 함께 AA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일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주식수 비율대로 나누어 가진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과 관련없는 이 사건 이사들 양도부분은 원고회사가 받았어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 중 일부를 분여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대법원-2016-두-54213, 2019. 5. 30)

13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가산세)

▶ 요지 : 외국법인이 국내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도차손

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대법원-2018-두-44746, 2018. 4. 25)

14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임(가산세)

▶ 요지 :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이 없는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도 가산세는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임 (대법원-2017-두-58717, 2017. 12. 7)

15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무관가지급금)

▶ 요지 : 개인주주를 이익분여자로 보기 위해서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개인주주에게 귀속될 이익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익의 분여자가 주식발행법인의 개인주주라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50980, 2017. 10. 26)

16 담합법인에게 지급한 입찰포기 대가의 손금 해당여부(손금)

▶ 요지 : 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지급한 담합사례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관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아님(대법원-2017-두-69750, 2017.10.26)

17 지급수수료 손금불산입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손금)

▶ 요지 : 법인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유상감자 방식으로 배분하면서, 기존의 주주에게 경영권확보 대가 등을 사업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료 성격이 단독주주로 남게 되는 주주가 부담할 비용의 성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대법원-2016-두-56981, 2017. 2. 23)

18 법인의 손금 해당 여부(손금)

▶ 요지 : 피고가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본 금융자문수수료는 원고는 사업 진행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 거래구조개발,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인 것인 바 원고의 손금에 해당함(대법원-2015-두-50146, 2016. 3. 10.)

19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특정 임원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금액 손금산입 여부 (퇴직급여)

▶ 요지 :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더라도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



계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도하게 지급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대법원-2015-두-50153, 2016. 2. 18.)

20 특수관계법인가간 상표권 사용(부당행위)

▶ 요지 : 원고의 상표를 자회사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고, 그 적정 사용료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수탁자가 해당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부가세 납세의무자이므로 위탁자 겸 수익자인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세 부과처분은 위법함(파기환송-국패취지)
(대법원-2018-두-33005, 2023.5.)

21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무수익자산 여부)(부당행위)

▶ 요지 :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대법원-2023-두-50288, 2023. 11. 30.)

22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 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기한임(익금)

▶ 요지 : 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해 대금의 잔금청산일로 일률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쟁점주식 취득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한 날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배당금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고,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므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쟁점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님(대법원-2023-두-55405, 2024. 1. 11.)

23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익금)

▶ 요지 : 토지 및 건물의 매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이 사건 양도가액을 토지 및 주택의 기준시가로 비례안분하여 토지의 매도가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23-두-51618, 2023. 11.30.)

국세청장, 법인세 신고기간을 맞아 일선 현장 방문

- 국세청, 2024. 3

- 수출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패키지(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현장 점검
-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내 철근 제조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의견 청취

- 김창기 국세청장은 3월 법인세 신고기간을 맞아 3월 20일(수) 김해세무서와 부산강서세무서를 방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특히, 복합 경제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납세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였으니 이에 대한 문의에 성실히 안내하고,
 - 그 외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에서 철근을 제조하는 대한제강(주)을 방문하여 세무상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이경백 대한제강(주) 대표는 “공장폐열을 재활용한 스마트팜 사업으로 냉난방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며 감사의 말을 전하였고,
 - * 에너지 이용합리화 시설 등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로 최대 15%까지 법인세 세액공제
 -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기업들을 위해 세정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

기업 현장방문 개요

□ 방문 개요

- (일 시) ' 24. 3. 20.(수) 13:30 ~ 14:30
- (장 소)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내 기업

▶ (대한제강(주)) 철스크랩을 원재료로 하여 빌릿*을 생산하는 제강사업과 반제품인 빌릿을 원재료로 하여 철근을 생산하는 압연사업, 그리고 가공철근관련 사업과 물류업을 주업으로 영위
 * 형강(形鋼)으로 압연하기 전의 각형(角形) 단면 강재(鋼材)로서 긴 것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 (국세청) 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서부산세무서장 등
- (내 용) 기업 애로사항 수집 등

□ 대한제강(주)(이경백 대표)

▶ '20년 9월부터 동종사인 와이케이스틸 지분을 인수하여 70%의 지배력을 획득 함으로써 제강 사업에 가장 중요한 철스크랩 구매력과 건설사 철근 판매 협상력 등 시장지배력이 강화되어 국내 철근 생산 능력 3위 위치 유지
 ▶ 미국법인, 싱가포르 지사 등을 통해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하였으며, 미래성장분부를 신설하여 신사업 개발에도 노력

□ 대한제강 스마트팜 사업

◆ 공장 폐열을 활용하여 온실 냉난방에 활용, 스마트팜 운영비용 절감
 • LNG를 연료로 하는 가열로에서 나오는 300도의 배기가스로 물을 데우고, 그 온수가 유리 온실 내 파이프 안으로 흘러 온실을 난방
 • 여름에는 물이 증발하는 원리의 흡수식 냉동기를 사용, 물을 증발시키기 위해 폐열 온수로 저온수를 증발시켜 여름철 온실을 냉방
 • 1,000평 규모 유리 온실에서 냉난방 비용을 연간 1억 2천만원 절감할 수 있다면 타 농업에 비해 상당한 비용 경쟁력을 확보

역동적 경제성장을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

- 국세청, 2024. 8

1 추진배경

- 수출기업의 원상회복과 미래성장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2 지원대상

- 기존
 - 혁신성장기업
 - 스타트업기업
 - 혁신중소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 청년친화강소기업
 - 혁신기업국가대표
 - 수출중소기업
 - 수출비중50% 이상
 - 수출우수중소기업
 -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 수출의탑수상기업
 - 신산업신기술녹색기술
 - 초격차스타트업기업
 - 신산업분야육성기업
 - 신기술인증기업



- 녹색기술인증기업
- 구조조정중소기업
 - 기업활력법적용기업
 - 구조혁신지원대상
- 2024년 추가 대상
 - 뿌리기술전문기업
 - 수출, 프레스등제조업전반의기반공정기술을갖춘기업
 - 산자부뿌리기술전문기업인증기업
 -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 소재, 부품은중간재를의미하며며장비는소재, 부품을생산하는장치또는설비를의미
 - 산자부소부장전문기업인증기업

3 지원내용

① 자금유동성 지원	② 경영 지원	③ 맞춤형 세무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기한 연장 (최대 9개월) • 납세담보 면제 (1억원 한도) • 압류·매각 유예 (1년 범위내) • 경정청구 우선 처리 (2개월 →1개월) • 영세율 등 환급금 조기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 신고내용확인 제외 (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는 예외) • 맞춤형 세무정보 분기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중소기업, 신산업 중소기업, 뿌리.소부장 전문기업에게 홈택스 전용상담시스템 제공 • 구조조정 중소기업 업종전환, 주식양도, 고용 등 기업구조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쟁점 상담지원(각 지방청 법인세과)

3-1 자금유동성 지원

항 목	세부 지원 내용
• 납부기한 연장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내 승인
• 납세담보 면제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
• 압류·매각 유예	채납된 기업이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 범위내 승인
• 경정청구 우선 처리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처리기한 단축 (기존 2개월 →1개월)
• 환급금 조기 지급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미리 지급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최대한 앞당겨 지급

3-2 경영지원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란?

R&D 세액공제를 신청 하기 전 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 ·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 하여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는 제도 각 지방청 법인세과에서 심사

- 신청인 내국법인, 거주자
- 신청대상 연구·인력개발 관련 비용 지출예정인 비용, 일부비용에 대해서만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
- 신청기한 법인세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 단,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은 경정청구, 수정 신고, 기한 후 신고 전에 신청 가능)
- 제출서류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보고서 등 관련 서류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 심사결과 서면으로 결과통지, 1 회에 한하여 재심사 신청 가능
- 효력부여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제외

● 세무검증부담 축소

○ 신고내용확인이란?

수입금액 신고 누락, 비용 과다 계상, 감면 오류 적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 전에 미리 안내하였음에도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법인에게 수정신고를 안내

○ “법인세, 부가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다만, 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로 선정

●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

○ 뉴스레터 형식으로 분기마다 이메일 발송

● 홈택스 전용상담 시스템

시스템 수출 중소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뿌리·소부장 전문기업에 제공

수출 중소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세무서 전담직원
형식·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세무 애로사항 기재	신속한 답변 제공
Q. 법인 자금 여유가 없어 이번 부가세 5천만원을 납부 못할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안내

● 구조조정 세무쟁점 상담지원

○ 구조조정 중소기업에 제공

구조조정 중소기업	지방청 전담직원
구조조정 관련 세무쟁점 유선 문의	유선 답변 제공
Q. 구조조정 과정에서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합병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서면질의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 안내

조세특례 자기 점검 요령

- 국세청, 2024. 8

1 공통적인 사항

가. 공제감면 대상업종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을 적용하거나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므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먼저 영위하는 사업이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 업종의 분류는 조특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영위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영위업종에 따라 감면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나. 세액공제 대상자산

- 일반적으로 중고자산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경락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과 사업을 양수하면서 취득하는 자산은 중고자산에 해당합니다.
 - 해외에서 매입하는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도 중고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또는 자본적지출액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 투자금액의 계산

-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투자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투자금액의 계산(조특령§21⑦) :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
 ① 총투자금액에 작업진행률(법인령 §69①)에 의해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② ㄱ) 과 ㄴ)을 합한 금액
 ㄱ) 해당 과세연도 전에 조특법 §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ㄴ)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ㄱ)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①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투자금액의 계산시 유의할 사항
 -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 분으로서 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 지급분(선급금 제외)만을 말합니다.(기본통칙 5-4-1)

라. 감면세액의 계산

-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법인세법 §59②)

$$\text{감면세액} = \text{법인세 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소득}}{\text{과세표준금액}} \times \text{감면율}$$

-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안분계산
 - 공통익금 :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법인칙 §76⑥,⑦)
 - 공통손금 : 동일업종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다른 업종은 개별손금액에 비례
 - *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 의하고 소분류 해당업종이 없을 때에는 중분류에 의함
- 감면대상 소득계산 시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에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조특령 §124③에 따른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 등은 제외)의 증설투자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합니다.(조특법 §130①) 다만, 조특령 §124②의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사업용 고정자산(조특령 §124③에 따른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 등은 제외) 투자에 대하여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합니다.(조특법 §130②)

* 증설투자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¹⁾ 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 ²⁾ 되는 투자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2) 공장 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2. 제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¹⁾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 ²⁾ 되는 투자	
1)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2) 공장 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바. 중복지원의 배제

- 아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서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조특법 §127④)

① 세 액 감 면		② 세 액 공 제	
법조문	공제감면내용	법조문	공제감면내용
§6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8의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2의2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	§13의2	내국법인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31④, ⑤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		
§32④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	§24	통합투자세액공제
§62④	공공기관 혁신도시이전 감면	§25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63①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63의2①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2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64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66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	§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67	영어조합법인 세액감면		
§68	농업회사법인 세액감면	§104의14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85의6①, ②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99의9②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04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99의11①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04의24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04의22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세액감면	§104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121의9②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 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		
§121의17②	기업도시개발사업세액 감면 등	§122의4①	금사업자와 구리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121의20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121의21②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세액감면	§126의7⑧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121의22②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 §30의4(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7(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동시 적용가능

* §6⑦(고용증가에 따른 감면)와 §29의7(고용증대세액공제) 동시적용 불가

- 투자세액공제를 이월공제 받은 경우에는 공제대상 사업연도(투자한 사업연도)의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아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합니다.(조특법 § 127⑤)

법조문	감 면 내 용
§6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2의2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
§31④, ⑤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
§32④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
§62④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감면
§63①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63의2①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64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85의6①, ②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99의9②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99의11①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04의24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
§121의9②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
§121의17②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121의20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121의21②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121의22②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121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의4	외국인투자의 증자에 대한 조세 감면

-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아래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조특법 § 127②)



법조문	감 면 내 용(1)~3) 중 하나만 선택)
1) §8의3③	상생협력 기금출연 세액공제
2) §24	통합투자세액공제
3) §2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법조문	감 면 내 용
§19①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29의4와 중복적용 불가)
§29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6와 중복적용 불가)
§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6와 중복적용 불가)

사. 감면세액의 추정

-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5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처분자산의 세액공제상 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조특령 §137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조특법 §146)
 - 현물출자, 합병·분할, 분할합병, 자산교환, 통합·사업전환·사업승계, 내용연수 경과의 경우 등에는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아. 공제감면 적용순서

- 동일한 과세기간에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공제감면세액과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공제감면세액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공제감면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공제감면세액을 나중에 적용합니다.(조특법 §132③)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백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 행정안전부, 2024. 3

- 서민 주거생활 안정화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주택 수 제외
- 영세채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예금·급여 등 압류금지 기준금액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3월 19일 국무회의 의결, 3월 26일 공포 즉시 시행 예정

< 지방세관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사례 >

#사례 1. 신축 소형주택 신규 취득

甲은 올해 2월 서울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 빌라(전용면적60㎡, 6억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1채) 때문에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조정대상지역 8%)를 부담하게 되어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4,200만원 감소된 6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고 임대 목적의 소형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 수도권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사회초년생 등의 임대주택 수요 충족

#사례 2. 지방 미분양 아파트 신규 취득

乙은 은퇴 후 지방 거주를 대비해 고향인 ○○시에 아파트 1채를 추가 구입할 생각이 있었으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어 취득세(비조정대상지역8%) 부담때문에 구입 결정을 망설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향후 2년간 지방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85㎡&6억원 이하)를 신규로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시 소재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84.5㎡, 4억원) 1채를 계약하여 올해 4월에 취득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2,800만원 감소된 4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고 고향 지역의 아파트를 서둘러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乙은 은퇴 준비를 미리 할 수 있게 되었다.

⇒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는 물론 귀향·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주택 구입 증가로 생활 인구가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2.20.~3.11일) 후 차관회의(3.14일) 및 국무회의(3.19일) 의결을 거쳐 공포(3.26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10일 주택공급대책 관련 지방세 지원

- 최근 주택 구입·보유 부담의 증가와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공급도 위축된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로 임대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형주택(非아파트)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전세시장 등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해당 소형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종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 (소형주택 취득) ①주택공급대책 발표일('24.1.10.)부터 '25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와 ②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24년 1월10일부터 '25년 12월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하여 60일 이내에 임대등록할 경우는 해당 소형주택은 취득세액 산출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된다.
 -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 지방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③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 적용대상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 예를 들어, 기존 1주택자(개인)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24년 5월에 1채(3억원), '24년 8월에 1채(3억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
 - 종전에는 '24년 5월에는 2주택자의 세율(6억이하1%), '24년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이 적용되었다.
 - 이번 개정으로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시점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6억이하

1%)이 적용된다.

< 현행 주택 유상승계 취득세율 >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이상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조정대상지역 (서초·강남·송파·용산구)	1-3%	8%	12%	12%

② 과세 합리성 및 납세편의 제고 등

-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된 추세를 반영하여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 (특수관계인) 본인과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지방세기본법」 §2①34)
 - ※ 「국세기본법 시행령」 既 개정사항('23.2.28.)으로 조세행정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반영
 - 그동안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된다.
 - 한편,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혼외자의 생부나 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 영세채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하고, 동시에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10백만원→15백만원)과 해약·만기환급금(150만원→250만원)의 압류금지 기준금액도 완화한다.

- 또한, 공매 매수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24.7.1일부터 시행)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의 신청대상(매수신청인)의 범위를 저당권, 전세권, 기동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 압류재산 공매시 해당 재산에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인이 매수할 경우, 매수대금에서 배분받을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배분기일에 납부하는 제도

- 이와 함께 국민제안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건의된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담배소비세 납세의 무자(제조사·수입판매업자)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 먼저,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를 폐기*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폐기확인서의 제출기한을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서 '폐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연장한다.
 -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품질불량 및 판매부진 등으로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에 폐기 가능
 - 동시에 담배소비세 신고시 첨부서류인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증명서도 종전에는 각 시·군



에서 각각 발급받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에서 통합 발급이 되도록 개선한다.

-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침체된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지방의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참고 - 지방세관계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요약)

1 지방세기본법 하위법령

제목	조문	주요내용	비고
① 특수관계인 범위 합리화	영 제2조 제1항	○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 범위 조정* * ① 혈족 : 6촌 → 4촌 ② 인척 : 4촌 → 3촌 ③ 혼외자의 생부 또는 생모 포함	국세 일치 ('23.2.28.)
④ 재조사 결정 관련 위임규정 마련	영 제64조 제7항	○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 관련 원처분 유지 사유 명확화* 및 재조사 결과에 대한 통지의무 신설 * 신청인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	법률 개정 후속 조치 ('23.3.14.)
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대상 구체화	영 제83조의2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인 “예산안이 첨부되는 자료”를 “세입예산추계보고서(지방세 한정)”로 구체화	법률 개정 후속 조치 ('23.3.14.)
⑥ 지방세 불복·쟁송자료 제출범위 구체화	영 제92조의2	○ 지자체 장이 소송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 구체화 * 청구(사건)번호 및 사건명, 사건개요 등	법률 개정 후속 조치 ('24.7.1.)

제목	조문	주요내용	비고
⑦ 한국지방세연구원 경영공시 위임규정 마련	영 제93조의2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경영공시 사항 ¹⁾ 및 공시 시기 ²⁾ 구체화 1) 전년도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차입금 현황 등 2) 공시사항별로 마련	법률 개정 후속 조치 (‘24.1.1.)
⑧ 과세자료 제출범위 확대 등	영 별표3	○ 체계적인 납세관리를 위해 과세자료 제출범위 확대 ¹⁾ 및 제출시기 정비 ²⁾ 1) 개인지방소득세의 국세 연계신고 관리를 위 해 국세 소득발생 내역에 관한 자료 추가 등 2) 주민세 과세자료 제출시기 조정(매년 8.5일 →7.5일)	제도 개선
⑨ 이의신청 결정서 서식 보완	규칙 별지서식 (제65호)	○ "이의신청 결정서" 상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 추가 *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 조세심판 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제도 개선
⑩ 과세자료 제출서식 추가	규칙 제49조, 별지서식 (제434호, 제435호)	○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추가되는 대상*에 대하여 제출서식 등 신설 * 국세소득발생내역, 무선국 등록면허세 과세자 료	시행령 동반개정 (영 별표3)

2 지방세징수법 하위법령

제목	조문	주요내용	비고
① 압류금지 재산 금액기준 상향	영 제46조 영 제47조	○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 으로 상향 등 ※ 국세징수법 시행령(24.2.29. 공포) 동반 개정	국세 일치 (‘24.2.29.)



제목	조문	주요내용	비고
② 공매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 신청대상자 등 마련	영 제85조의2 규칙 제66조의2 규칙 별지서식 (제79호의2)	○ 공매매수대금 차액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및 신청방법 등 구체화하고, 신청서식을 신설 * 공매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저당권·전세권·가등기담보권·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 신청인 ※ 국세징수법 시행령(24.2.29. 공포) 동반 개정	법률 개정 후속 조치 (‘24.7.1.)
③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서식 보완	규칙 별지서식 (제88호)	○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서식상 제출 및 처리절차 등 개정사항 반영* * 이의제기 시, 배분기일로부터 1주일이내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등 안내	법률 개정 후속 조치 (‘24.1.1.)

3 지방세법 하위법령

제목	조문	주요내용	비고
① 취득세 과세표준 범위 및 증거서류 구체화	영 제18조 제3항 영 제38조의2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지급할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명확화 * 특수관계인, 보조금 지급자, 건축주 지위 양도자 등 ○ 법인의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의 범위* 구체화 * 재산상태, 거래내용, 주주변동사항 확인서류 등	법률 개정 후속 조치 (‘24.1.1.)
② 신축 소형주택 등 취득시 중과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	영 제28조의4	○ 소형주택 등 일정 요건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해당 주택을 제외한 주택 수 기준으로 취득세율 적용 * ① 신축 소형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 취득 시 ② 기축 소형주택을 취득 후 임대등록 시 ③ 수도권 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제도 개선

제목	조문	주요내용	비고
③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안분 기준 등 마련	영 제69조의2	○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세액을 시·군에 납입시 안분 기준, 납입명세 및 공제명세 통보규정 마련	법률 개정 후속 조치 ('24.1.1.)
④ 담배폐기 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영 제70조의2	○ 담배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폐기된 경우 공제·환급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담배폐기 확인서의 제출기한을 연장* * (현행) 7일 이내 → (개선) 다음달 말일까지	제도 개선
⑤ 주행분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 송금방식 보완	영 제134조	○ 주행분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주된특별징수의무자에게 송금하는 금액에서 사무처리비가 차감되지 않도록 보완 ※ 사무처리비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배분	제도 개선
⑥ 취득세 신고서상 첨부서류 보완	규칙 별지서식 (제3호)	○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다른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토록 보완 ※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로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취득일을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보도록 개정(영 §20②)	법령 개정 후속 조치 ('24.1.1.)
⑦ 주행분 자동차세 사무처리비 배분기준 신설	규칙 제72조	○ 주행분 자동차세 사무처리비의 배분액1), 배분비율2)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1) (배분액)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 2) (배분비율) 주된특별징수의무자 100분의 90 특별징수의무자 100분의 10	제도 개선
⑧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사무처리비 규정 등 마련	규칙 제30조 규칙 별지서식 (제29호)	○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사무처리비의 범위1) 및 시·군 금고로 납입방법 2) 등 구체화 1) 징수세액의 1만분의 5범위 + 불복지출비용 2) 안분명세 및 사무처리비 공제명세 통보 등	법률 개정 후속 조치 ('24.1.1.)
⑨ 담배소비세액 공제·환급증명 총괄표 신설	규칙 제29조 규칙 제31조 규칙 별지서식 (제30호의2, 제27호, 제28호)	○ 담배소비세액 공제·환급증명서를 총괄하는 서식을 신설하여 납세편의 제고* * (현행) 납세지 관할별 각각 증명서 발급 → (개선) 가까운 한 곳에서 일괄 증명서 발급	제도 개선
⑩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식 개선	규칙 별지서식 (제42호)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서식상 가감세액 및 가산세를 법인분과 개인분으로 세분화	제도 개선

M&A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금융위원회, 2024. 3

금융위원회는 기업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하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개정안은 상장사 합병 등*에 관한 △공시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의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은 합병에 준하는 중요한 행위로 보아 합병관련 개정사항을 준용

첫째, 이사회 의견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한다.

현재 합병에 관한 이사회 논의내용이 공시되지 않아 일반 주주가 이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은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가액,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이 포함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규정 개정안에서는 이사회 의견서를 당해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 서류에 추가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합병 진행과정에서 이사회 책임성이 강화되고, 합병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외부평가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 합병의 경우에는 외부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규율이 미비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객관적이고 내실있는 외부평가가 가능하도록 외부평가기관의 행위규율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외부평가기관이 합병관련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외부평가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규정 개정안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이 위임한 외부평가기관 품질관리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였다. 합병 관련 업무수행시 독립성·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이해상충가능성 검토

와 기피 의무에 관한 사항, 미공개정보의 이용 금지 등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담도록 하였다.

또한, 규정 개정안은 외부평가기관의 합병가액 산정과 평가 업무의 동시수행을 금지했다. 기업에게 특정 합병가액을 권고하거나 산정방법을 제시하는 등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한 경우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시행령 개정안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위원회 의결 또는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를 통해 외부평가기관에게 독립적인 업무 수행 환경을 제공하여 공정한 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개선한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하여 기업 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하여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과 대조된다.

* 상장사의 경우, 기준시가를 다음 방식에 따라 결정 :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 계약일 중 앞선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후 산술평균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외부평가 의무화 등을 전제로, 비계열사간 합병은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선을 지원하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금번 제도개선은 ‘경제적 실체’가 있는 기업으로서 ‘대등한 당사자’간 협의가 가능한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계열사간 합병(대등한 당사자 간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그 결과 합병가액 산정시 일반주주에 대한 피해가 발행할 가능성이 있는 측면)과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합병(외형상 합병의 형식을 취하나, 비상장회사의 IPO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성을 감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정안은 경제·금융단체, 외부평가기관,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기업 합병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 「M&A 제도개선 간담회(‘24.2.6일)」, 「기업 M&A 지원방안(‘23.5.8일)」,

「기업 M&A지원 세미나(‘23.3.27일)」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3.5일(화)부터 4.15일(월)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근로시간 줄었다고요? 「위라벨장려금」 받아보세요!

- 고용노동부, 2024. 3

【활용 사례1】 위라벨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의 1호 지원승인 사업장은 광주 광역시에 소재한 상황·감정분석 인공지능(AI) 개발 기업인 '인디제이(대표 정우주)'이다. 인디제이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전직원 35명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에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활용 사례2】청주시에 소재한 자동화장비 개발 전문기업인 '(주)코엠에스(대표 황선오)'도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위라벨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주)코엠에스는 전직원 141명을 대상으로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주1회 '가정의 날'을 운영하여 조기 퇴근을 독려할 계획이다.

「위라벨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 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최대 1억 8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사업장에서의 모든 근로시간을 의미

** 30명(지원대상 근로자 100명의 30%) x 월 30만원 x 12개월

그간 사업주가 위라벨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위라벨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첫 시행된 동 장려금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3월 14일(목) 14시 대전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충청권 전역 사업주, 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정환 고용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과제이자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라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에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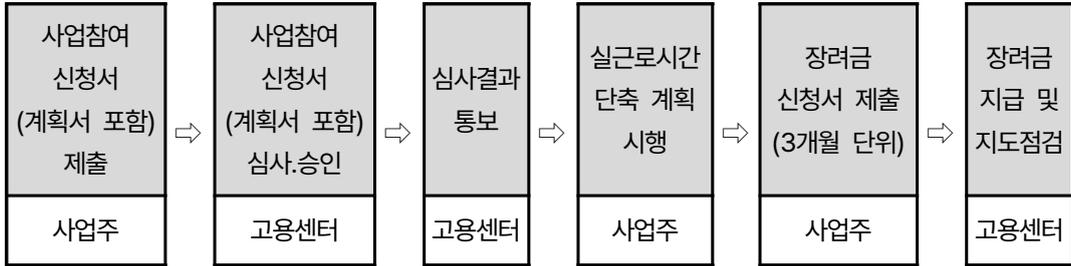
붙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사업 개요**

- (개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대상)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 전체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①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계획 수립, ②시행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③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실근로단축시간 산정방식)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지원인원)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한도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액)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 (지원기간)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 (지원방식) 공모형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 또는 고용 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유형별 주요 내용 비교>

구분	소정근로시간단축	실근로시간단축
지원요건	개인 단위 주 소정 근로시간 단축 (35시간 이상→ 15~30시간 이하)	사업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
지원기간	1년	1년
지원액	① 단축 장려금(월 30만원) ② 임금 감소액 보전(월 20만원)	단축 장려금(월 30만원)